
국가유산 영문도서 제작 및 해외유통 사업 민간위탁 과업내용서

2026. 1.

국가유산 영문도서 제작 및 해외유통 과업내용서

I 과업개요

□ **사 업 명** : 국가유산 영문도서 제작 및 해외유통

□ **사업목적**

- 한국 유산에 대한 서적을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게 영문으로 제작하고 해외 플랫폼에 유통하여 향후 해외 홍보의 기반을 마련함

□ **사업기간** : 1+1년

- 총 4~6종의 단행본에 대하여 1차년도 기획안 및 초안 제출, 2차년도는 편집·번역·감수·인쇄 등 도서 제작 완료 후 해외유통 개시 및 실적 제출을 목표로 함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1차년도의 위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차년도까지 사업 진행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준용
 - ※ 장기계속계약 진행(2년)

□ **사업 기본방향**

- (영문도서 제작) 한국 유산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도 어필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여 신규 영문도서 제작 및 유통
 - 도서 대상 및 주제 선정, 전체 기획, 작가 섭외, 번역(필요시), 교정, 감수, 디자인, 편집, 인쇄(초판 1,500부) 등
 - 실물도서 외 전자책 제작·발매를 통해 국내외 접근성 향상

- 도서 대상 및 주제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사업 결과물	1차 초안 (원고 및 기획) *가능 시 인쇄까지	최종본 제출 미국시장 유통개시 및 마케팅, 실적 제출

- (해외유통) 해외 유통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전반(미국 시장 기준), 영문 도서의 국내 판매 관련 사항
 - 사업 결과물(영문 도서)의 제출 및 해외유통 실시 이후 사후관리 (절판 방지, 도서 보관 등) 포함
 - 유가지(有價紙) 판매를 통해 발간비 절감 및 외국 일반에 도서 보급 확산을 통하여 한국유산 향유 기회 확대 제공
- (국내유통 및 2차적 저작물 제작) 출판사는 해당 영문도서의 국내 유통에 대한 판권을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있고, 협의에 따라 국문 판 등 2차적 저작물 제작이 가능

□ **사업비 : 5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연**

- 사업비는 각 연도마다 동일하게 지급되나, 2차년도의 경우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합계
총 예산	500,000,000	500,000,000	10,000,000,000

- 예산 변동에 따라 기간 내 도서출판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하나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함
- 향후 국가유산청에서 도서를 추가 구입할 시 유통원가로 제공

II 과업 세부내용

□ 영문도서의 직접 기획·저술·감수 등 도서 제작 및 출판 일체

○ 대상 및 형식

- 국가유산에 대한 영문 도서로서, 유산의 철학적 배경이나 원형적 형식과 같은 복합적이고 고유한 개념을 추상적·해석적으로 풀어내며, 사진 에세이 형식의 시각적 예술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된 책

* 국가유산의 유형 및 개념은 국가유산기본법(23.5.16.제정)에 의함

- 제작되는 도서는 시리즈물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규격을 통일할 필요는 없음. 각 도서는 각각의 개성에 맞게, 각기 다른 주제와 소재를 다루어야 함
- 한국의 유산을 대상으로, 기존에 널리 알려진 분야와 상대적으로 조명이 부족한 분야를 아우르되,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구성하며, 보고서·교과서식 서술은 지양함
- 기존에 출판된 적 없는 단행본으로 200~300페이지 분량의 가로 15.2cm 이상, 세로 22.5cm 이상 규격으로 하며, 고급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할 것

○ 주제 범위

- 여러 국가유산을 창의적으로 한 데 모아 스토리텔링하여 기존에 영문으로 출간된 국가유산 관련 도서와 차별화될 것
- 기존의 학술적, 체계적 분류에 얽매이지 않는 심미적, 추상적 컨셉 중심으로 구상

<다음의 예시를 참고>

- . 한국의 불교 (산사, 불상 등 부속물 및 사상적 부분 포함)
- . 전통 문양(벽화, 건축물, 공예품에 나타난 전통 문양 소개 및 현대적 재해석)
- . 민화(길상과 소망, 자연과 동물 등 주제별 제시 및 형식과 역할 소개)
- . 한국의 자연유산(명승, 동·식물 등)

- . 한옥(지역별 주거 유형, 전통 마을의 구조 등)
- . 전통 복식(역사, 시대별 변천, 지역별 전통 등)
- . 전통 공예 전반(도자·목공·금속·섬유 등 재료별·기법별 접근)

- 생활유산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인이 공감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함
- 개별 문화유산(예: 미륵사지 석탑)나 제작자 등 인물(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이수자 A)에 대한 서적 제외
- 기타 세부적인 소재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

○ 내용 및 구성

- 사실에 근거한 내용한 비문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적 표현과 각종 스토리텔링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유롭게 구성
-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왜곡이나 불확실한 정보 수록, 소재만 문화유산일 뿐 내용이 전혀 무관한 경우, 정치적 색채) 수록 불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자문)
- 저자 원고 작성 과정에서 표현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청이 저자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원고의 게재 및 출판에 따른 책임은 출판사가 부담한다.
- 전반적으로 텍스트의 비중은 전체의 1/2 이하로 하며 양질의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
- 만화, 오디오북, 가이드북 형식은 제외

○ 저자 섭외 등을 통해 영문도서 원고의 직접 기획·저술 등 제작 일체

- 기존 출판된 국문 도서의 단순한 영문 번역 서적은 원칙적으로 금지

○ 출판사는 국가유산청과 논의하여 도서별로 감수자를 둔다. 다만, 도서별로 상이할 필요는 없음

○ 도서 주제 선정 등 출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자문회의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

- 사업자는 회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결과를 정리하여야 하며,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된 내용은 중간보고서에 적시하여야 함

* 회의는 3월·7월·10월의 1~2주차 권장

○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 저자는 종이책 판매수익에 대한 인세와 원고료 또는 저작권 양도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출판사로부터 지급받음

* 인세는 권당 판매가격의 10% 이내, 전자책의 경우 25% 이내로 정하되 출판사와 저자간의 자발적 합의에 따름

- 수탁기관인 출판사는 제작·출판된 영문도서 및 원고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계약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해야 함

* 출판사는 저자와 계약 시 위 사항과 저작권 양도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은 출판사에게 있음

** 본 사업의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수탁기관인 출판사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국가유산청을 전적으로 면책 시켜야 함

- 도서에 수록된 일체의 사진, 그림, 글 등 개별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출판사에 있음

- 그 밖에 필요시 사사표기와 관련된 사항, 공동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규정에 대한 동의

□ 제작된 영문도서 현지 출판 및 유통

- 해외 현지 유통계획 수립
 - 미국 등 해외 유통망 확보 계획 마련 및 집행
 - 미국 ISBN 등록(필수), 출판 도서의 CIP(출판시도서목록, Cataloging in Publication) 등록 및 OCLC의 MARC Record 취득 등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는 모든 유통관련 사항 포함
- 유통개시 후 10년 내 절판 금지 및 절판 방지 대책 수립
- 미국 아마존 유통 기본, 미국 내 도서관 유통, 도매상 및 오프라인 서점 유통(증빙 제출 필요)
- 사업 종료 전까지 출판 대상 도서의 전체 출판이 완료되어야 함

□ 제작 도서 국내외 홍보 및 확산

- 미국 포함 해외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 내 미국 아마존닷컴 기준 마케팅(검색 부스터 등)
- 판매 동향 및 독자 반응 분석

□ 국가유산 영문도서 기획 자문회의 조직 및 운영

- 국가유산청 사업 담당자 또는 추천위원 및 위탁사업자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 자문회의를 통해 도서 주제, 내용, 소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위탁사업비에 자문회의 조직 및 운영비용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봄

□ 결과물의 제출(1·2차년도 전체)

- 국내저자 저술의 경우 ①국문 초고 원본 파일(이미지 및 디자인 포함), ②영문 번역 원고 파일, ③원고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 원본 파일, ④최종

출판물 실물 100부와 pdf 파일 및 E-book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해야 함

* 원본 파일은 USB 또는 CD로 제출

- 해외저자 저술의 경우 ①영문 초고 원본 파일(이미지 및 디자인 포함), ②국문 번역 원고 파일, ③원고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 원본 파일, ④최종 출판물 실물 100부와 pdf 파일 및 E-book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해야 함

* 원본 파일은 USB 또는 CD로 제출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사업 결과물	원고 및 기획안	최종본 제출 미국시장 유통개시 및 마케팅, 실적 제출

- 미국 ISBN 등 유통관련 등록 사항 및 출판도서 메타 데이터 활용 현황 제출
- 사업종료 시 미국 내 도서 유통 현황 자료 제출
- 1차년도 제출 대상 결과물은 협의에 따라 2차년도 개시 후 2개월 내 제출 가능하며 2차년도 제출 대상 결과물을 1차년도에 조기 제출하는 것도 가능
- 그 밖에 약정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결과물을 사업 종료시까지 제출해야 함

1. 과업내용의 해석

- 수탁기관(출판사)은 과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약정서와 본 과업 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상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관(국가유산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 사업 추진

- 수탁기관은 과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 수탁기관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국가유산청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과업수행기간 중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과업수행에 따른 행정조치 등 국가유산청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위탁기관이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위탁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위탁기관은 참여 구성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추진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위탁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수탁기관은 사업 운영계획, 기간 및 사업비 예산내역, 예산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절차

- 본 위탁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위탁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일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국가유산청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필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 중 국가유산청과 수탁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국가유산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 수탁기관은 본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각종 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를 활용할 시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외부자료의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수탁기관은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하며, 대상기관 시설물 및 문화유산의 훼손 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해야 한다.

4.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

- 수탁기관은 2분기 중 사업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에는 총평, 세부사업실적, 예산집행결과, 사업의 효과 및 평가, 개선사항, 홍보실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국가유산청의 보완·수정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지도·감독

- 국가유산청은 사업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국가유산청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국가유산청은 사업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손해배상 등

-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기관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
증명의 의무는 수탁기관에게 있다.
-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가유산청이 제3자에게 사업
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를 국가유산
청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7. 위탁약정의 해지

- 국가유산청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
지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위탁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수탁자가 사업기간 중 관련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다음의 경우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전액 또는 일부가 회
수될 수 있다.
 - 허위사실 및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 지원금을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제출기간 내에 결과보고서 또는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 집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가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기업 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 원가업체를 지정하여 원가정산,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 검사 예산은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 사업비의 집행과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235호)'을 준용한다.
-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 유통에 따르는 판매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하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수탁기관은 25% 이내로 수익금에 대한 이윤을 설정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사업 방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단계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 사업에 대한 수수료만 취하고 사업 전부를 재하도급 하는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규모의 계약은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한다.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국가유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청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